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2985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박승수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7,014,640원과 그 중 182,714,018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A 사이에 2019. 9.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접수 제170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A 사이에 2020.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 접수 제1263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갑 제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와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비록 2020. 11. 6. 대위변제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이미 구상금채무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상의 주채무자였고, 피고 A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A은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미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점, 피고 A은 신용보증계약상의 주채무자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자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 회사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대한 외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되어 있던 피고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서를 피고 A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위 약속서를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조규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한 피보증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는 각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해행위 수익자들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이 소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A의 거래은행에 피고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③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④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권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 A 이 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3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27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8. 7.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 은 2017. 8. 1.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 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액을 238,0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7. 30.으로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보증의뢰인인 피고 A 은 2020. 6. 19.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 이 위 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A 을 대위하여 2020. 11. 6. 위 은행에게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82,714,018 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위 대출에 있어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존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1000분의 17의 비율에 의한, 이 사건 보증에 있어 위약금은 1,097,400원(238,000,000원 × 17/1000 × 99/365(2020. 7. 31. ~ 2020. 11. 6.))이 됩니다.

다. 대지급금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금 3,228,44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가 25,218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지급금 잔액은 3,203,222원(3,228,440원 - 25,218원)이 되었습니다.

라. 손해금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

4. 관할법원의 합의

원고와 피고 A 은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원고의 이 약정에 의한 보증거래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원고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중 원고가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제1사해행위(피고 A 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피고 A 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근저당권설정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20. 접수 제1700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판결, 대법원2008.12.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참조).

2) 구체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있던 2019. 9. 17. 이전인 2017. 7. 31. 이미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② 피고 A의 2020. 6. 19.자 신용판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5호1)에 의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③ 실제로 2020. 11. 6.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1) D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 3) 가사 사해행위 당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82,714,01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 대위의 범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9. 17.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나202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A의 부동산의 담보제공행위(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 1) 우리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남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피고 A는 제1사해행위(2019. 9. 17.) 당시, 소극재산으로 ① 소외 E에 대한 2019. 8. 9.자 근저당권채무 8억원(채권최고액 966,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8. 1.자 (보증부)대출금채무 280,000,000원, 2017. 7. 28.자 할인어음대출금 52,920,120원, ③ 소외 F은행에 대한 2019. 8. 29.자 (보증부)대출금채무 100,000,000원, 합계금 1,232,920,120(수익자들에 채무 및 기타 채무는 기재 생략)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940,000,000원(G부동산시세 시세일만가 기준)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책임재산이었으므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의 2019. 9. 17.자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6. 제2사해행위(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20.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와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 접수 제1263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판결, 대법원2008.12.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참조).
- 2) 구체적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있던 2020. 6. 1. 이전인 2017. 7. 31. 이미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② 피고 A의 2020. 6. 19.자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5호2)에 의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③ 실제로 2020. 11. 6.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2) D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3) 가사 사해행위 당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82,714,018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성권을 취득하였고, 그 구성권 범위 내에서 위 은행의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6. 1.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나2022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A의 부동산의 담보제공행위(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우리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으로, 피고 A는 제2사해행위(2020. 6. 1.) 당시, 소극재산으로 ① 소외 E에 대한 2019. 8. 9.자 근저당권채무 8억원(채권최고액 966,000,000원), 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8. 1.자 (보증부)대출금채무 280,000,000원, 2017. 7. 28.자 할인어음대출금 52,920,120원, 2019. 12. 12.자 신용대출금채무 21,000,000원, ③ 소외 F은행에 대한 2019. 8. 29.자 (보증부)대출금채무 100,000,000원, 합계금 1,253,920,120원(수익자들에 채무 및 기타 채무는 기재 생략)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1,070,000,000원(G부동산시세 시세일 반가 기준)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책임재산이었으므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의 2020. 6. 1.자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C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따라서,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을 합한 187,014,640원(182,714,018원 + 1,097,400원 + 3,203,222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인 182,714,018

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6.부터 이전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9. 9. 17.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 ② 2020. 6. 1.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마땅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위소를 구함과 아울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원형지붕 19층 공동주택

1층 및 2층 각 735.40㎡

3층 및 4층 각 773.38㎡

5층 내지 16층 각 735.40㎡

17층 733.06㎡

18층 631.29㎡

19층 418.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080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3.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804.9분의 41.44

- 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

